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6·25 참전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0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4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7
3.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9
나.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안 제3조)	11
다. 보상금 및 추가 보상금(안 제4조·제5조)	14
라. 보상금에 대한 조세면제(안 제14조)	16
마. 결정전치주의(안 제15조)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이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소녀병 중에서 6·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년소녀병등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국가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6·25전쟁 과정에서 당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들은 자원입대하거나 징집되어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¹⁾를 포함하여 여러 주요 전투에 참가²⁾하였음.

□ 소년소녀병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으로서 그 학적 소유를 불문하고 만 17세 이하의 나이에 조국수호를 위해 전후방에서 근무하고 일정 기간의 복무 완수(상이 포함)로 인해 제대한 자로 정의³⁾할 수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2만 9,622명의 소년소녀병이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이 중 전후생존자는 27,049명, 전사자는 2,573명으로 나타남.⁴⁾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현황]

(단위: 명)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전사자	합계
인원	22,868	2,984	1,197	2,573	29,622

※ 자료: 국방부

1)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선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전투-1950년 8월 13일 ~ 8월 30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입대 이후 경찰·전방사단·미군·해병대 등 6·25전쟁 시 전 부대에 배치되어 후방에서 공비소탕 및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 전투·전투 지원·전투근무지원 활동에 참가했고, 특히 낙동강 방어선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활약한 것으로 나타남.

3) 6·25전쟁 소년병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06)

4) 국방부에 따른 현재까지 추정 생존자는 2,786여 명임(참전명예수당 수급인원).

□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이 총 105,752명⁵⁾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3만 여명에 달하는 소년소녀병의 참전은 아군 전력의 증강으로 이어져 전란 극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에도, 이들은 지난 2008년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 확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⁶⁾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기 전까지 그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평가와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함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 및 교육기회 상실⁷⁾로 인하여 제대 후에도 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소년소녀병이 겪었던 피해를 고려할 때,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의 보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소년소녀병 5명이 제기한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⁸⁾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5) 6·25전쟁 소년병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10)

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08. 6. 24.)

○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58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소년소녀지원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 확인하여 병적과 전사에 기록”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소년소녀지원병 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충훈탑 등 현충시설을 세워 이들의 명예를 고양하라”는 의견을 표명

7) 휴전 후에도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복무가 연장됨에 따라 성인이 되어 학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 소년소녀병 사례가 다수 제시되고 있음(「6·25전쟁 소년병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69~172).

8)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소송(2015. 10. 21. 2014헌마456)

○ 동 심판청구는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1950년경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나, 1년이 훨씬 지난 2014. 6.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나, 판단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

□ 다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참전자인 소년소녀병에게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상⁹⁾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동 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참전자¹⁰⁾별 개별 보상법이 촉발되어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¹⁾을 제시하고 있는 바, 소년소녀병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과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소녀병 관련 보상법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는데, 제19대 국회에서는 수정의결(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 등)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개별 입법보다는 전체적인 국가보훈체계 법 속에서 논의 필요 등의 사유 및 기 보훈혜택 수혜, 타 유사단체의 형평성, 상이 등급에 기반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도에 따라 보상하는 현 보훈체계와 미부합 등의 사유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그러나 비록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소년병만 대상으로 하는 입법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년병의 특수한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내지 배상을 도모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 지자체별 지원금(월 6~33만원), 의료지원(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액의 90% 감면), 양로지원(국가·지자체 운영 시설 무료, 민간시설 이용 시 국가가 비용 부담), 기타[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장제비 20만원 지원(국립묘지안장자 제외), 국·공립 휴양림/박물관/공원 등 입장료 면제]

10) 국민방위군(68만명), 학도의용군(2만 7,700명), 호림유격대(557명), 노무사단(93,000명) 등

11) 또한,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추가 보상금 지급은 상이 등급에 기반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도에 따른 보상을 하는 현 보훈체계와 미부합하며, 일부 예외 사례(백골병단유격대, 특수임무수행자)와 달리 소년소녀병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이나 특별한 희생 등 현 보훈체계 이외의 추가 보상 필요성의 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임.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논의 연혁]

구분	위원회	논의결과	비고
제16~18대	정무위	보훈처 부동의→임기만료 폐기	신체상이 등 특별한 희생이 없어 보상 제한
제19대	국방위	국방위 수정의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수정의결 내용>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 이중징집자 및 추가보상금 관련 내용을 삭제, 유족의 범위를 소년소녀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으로 한정
제20대	국방위	국방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개별 입법보다는 전체적인 국가보훈체계 속에서 논의 필요(기재부)
제21대	국방위	국방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기 보훈혜택 수혜, 타 유사단체의 형평성, 상이 등급에 기반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 헌도에 따라 보상하는 현 보훈체계와 미 부합 등으로 신중검토 필요(기재부)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 제정안은 소년소녀병 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보상금과 추가보상금(안 제4조, 제5조)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등을 규정한 22개 조문의 본칙과 시행일 등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2조(정의)	제13조(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3조(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	제14조(조세의 면제)
제4조(보상금)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제5조(추가 보상금)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6조(유족의 권리)	제17조(보상금의 환수)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8조(사실조사 등)
제8조(신청의 각하)	제19조(소멸시효)
제9조(지급결정)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제10조(결정서의 송달)	제21조(벌칙)
제11조(재심의)	제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보상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제정안은 보상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하게 보상심의위 구성, 보상금 종류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체계와 구성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중징집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하 개별 조문별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징집된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및 유족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을 규정한 정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2. “이중징집자”란 소년소녀병 중에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징집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소년소녀병 또는 이중징집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소년소녀병을 징집¹²⁾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자원입대, 모병, 가두모집, 징집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참전¹³⁾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전유형을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3) 「6.25전쟁 소년병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05

□ 둘째, 이중징집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군번을 부여받고 참전한 정규군임에 따라 이중징집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 셋째, 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징집된 17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소년소녀병으로 인정되어 전쟁 중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소년소녀병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전쟁 중 범죄행위로 불명예 제대를 한 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범죄행위로 불명예제대를 한 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입법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14)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2109호)에 관하여 ‘이중징집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2015. 11. 25.)한 바 있음.

□ 넷째,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의 공평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방계혈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⁵⁾.

나.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안 제3조)

□ 안 제3조는 소년소녀병, 이중집중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 ① 소년소녀병 및 이중집중자(이하 “소년소녀병등”이라 한다)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방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2109호)에 관하여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여 수정의결(2015. 11. 25.)한 바 있음.

- 제정안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소녀병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정안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이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소속 기관장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입법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안 제3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⁶⁾.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다. 보상금 및 추가 보상금(안 제4조·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소년소녀병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중징집자 등에게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보상금) ①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추가 보상금) 이중징집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이중징집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입은 피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상 등급을 정하기 위한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 확인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고, 추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이중징집 사실이 없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상금과 추가 보상금을 각각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과 같이 일괄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⁷⁾

[제19대 국회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수정의결 내용]

현행	수정안
제4조(보상금) ①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u>보상금을 지급한다.</u>	제4조(위로금) ①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u>위로금을 지급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추가 보상금) 이중징집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이중징집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u><삭 제></u>

17) 국방부는 폐지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로자(백골병단)에게 지급된 수준의 보상금(1,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보상심의위 설치·운영비용 연 5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 동안 총 78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25~'29년).

소년소녀병 보상 관련 비용추계('25~'29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788.9	157.78	157.78	157.78	157.78	157.78
보상금 지급(본인+유족)	763.9	152.78	152.78	152.78	152.78	152.78
보상심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5	5	5	5	5	5

자료: 국방부

*대상인원: 7,639명 = 생존자 2,786명 + 유족 신청자 4,853명(유족 24,263명 중 백골병단 보상신청률 20% 고려)

- ☐ 또한 제정안 제4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중 중요사항인 ‘금액’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안 제14조)

- ☐ 안 제14조에서는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조세의 면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이는 보상금에 대한 소년소녀병 등의 실질적인 수급권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유사 입법례¹⁸⁾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 ☐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¹⁹⁾에 동 법을 반영하는 개정이 동반

1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 25.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되어야 하나 동 법의 조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분은 삭제가 필요해 보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반영없이 다수의 입법례에서 보상금 등에 관하여 제정안과 같이 선언적 의미로 별도의 ‘조세 면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 결정전치주의(안 제15조)

- ☐ 안 제1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정안이 위원회의 결정(지급 또는 기각)을 거친 후에만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남소(濫訴)를 방지하는 한편, 사법적 심사 전에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에 따르면,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안 제8조에 따라 기간의 도과 등으로 신청이 각하²⁰⁾된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기각 및 각하 등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결정전치주의 관련 입법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8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지급신청 이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308